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
----------	------

제출년월일 : 2017.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에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하여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

나.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을 위한 조례안 개정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6조 제1항 제11호)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재 붙여 쓰기 되어 있는 조문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띄어쓰기 되어 있는 조문에는 붙여쓰기 적용 (안 제6조 제1항 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예산액 서울시 재정보전)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6. 12. 8. ~ 12. 28.(제출의견 없음)
- 나.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다.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 부패영향 분석평가 (적정함)

제6조(수수료의 감면)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수수료 감면의 혜택은 혜택을 부여하는 요건, 대상, 절차, 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볼 때 적정함.

【법무팀 의견】

- ▶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제6조제2항 중 “제9호”를 “제11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